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230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이채운

변론 종결2021. 7. 21.

판결 선고2021.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5. 3. 접수 제1641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크대 등을 소외 회사의 'D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2018. 9. 5. 합계금액 184,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7. 1. 원고에게 미수 공사대금 9,425만 원을 2019.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E 토지', 'E 건물'로 칭한다)에 관하여 2019. 5.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6. 10. 12.까지 F 명의의 계좌로 도합 3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F은 당시 소외 회사의 감사였고, 2020. 5. 22.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부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본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9,425만 원의 물품대금 내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별반 다툼도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로써 소외 회사가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실제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때는 자기 채권 상당액만큼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 중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들 중 1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이와 달리 채무자가 담보설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담보설정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은 채무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2)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 부동산

1	서울 광진구 G 외 2필지 H 건물 I호	383,000,000	2018. 4. 19. J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6억 원)
2	동소 K호	54,000,000	
3	동소 L호	154,000,000	
4	동소 M호	241,000,000	
5	E 토지	183,658,000	2008. 12. 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7억 1,000만 원)

1	서울 광진구 G 외 2필지 H 건물 I호	383,000,000	2018. 4. 19. J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6억 원)
6	E 건물	775,136,800	
7	N 토지	368,550,000	
(계)	2,159,344,800		

나) 금융재산

1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5,732
2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56,299
3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10,623
4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6,000,000
5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52,972
6	P은행	(계좌번호 6 생략)	22,923
7	P은행	(계좌번호 7 생략)	487,589
8	J은행	(계좌번호 8 생략)	117,769
9	J은행	(계좌번호 9 생략)	486,864
(계)	7,340,771		

다) 합계 : 2,166,685,571원(= 2,159,344,800원 + 7,340,77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은행(2020. 7. 27.

회신된 것), 기업은행(2020. 7. 27. 회신된 것), P은행(2020. 7. 28. 회신된 것), J은행(2020. 7. 30.

회신된 것)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는 다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각 채권 중 원고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들의 경우 이를 소극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였으며, 계산근거는 별지 계산내역 참조).

1	H 관리단	11,684,6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1311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금(2019. 5. 3.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2	R 외 3	201,492,9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3570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금. 위

1	H 관리단	11,684,6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1311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금(2019. 5. 3.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가압류의 본안소송의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가단134626)에서 인정된 원리금인 193,947,572원(= 56,982,524원 × 3 +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4.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주)S	19,100,0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0682 가압류 청구채권(청구금액은 14,100,000원이나, 2019. 8. 6. 변제된 500만 원을 가산). 원고는 위 원금에 2018. 12. 1.부터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가 2019. 8. 6.까지 소외 회사의 변제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고 별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T	56,090,90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1128 가압류 청구채권.
5	기업은행	30,970,488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잔액(음수임)
6	P은행	29,467,863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잔액(음수임)
7	국민건강보험공단	1,492,980	2019. 5. 기준 4대보험료 체납내역 합계액(총 4건)
8	U	30,557,0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665 가압류 청구채권(청구금액은 25,557,000원이나, 2020. 1. 3. 이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을 가산). 원고는 위 원금에 2018. 9. 12.부터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8. 9. 11.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 무렵 납품이 완료되었더라도 U과 소외 회사가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0. 1. 3. 이후의 불확정기한(건물 매도시)으로 변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기업은행	532,000,000	계좌번호(계좌번호 12 생략)(근저당권부 채무) 원고는 해당 금액은 대출금 원금만으로 연체이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기업은행	10,529,000	계좌번호 (계좌번호 13 생략)(신용대출)
11	J은행	476,958,520	근저당권부 채무(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 최종 회신에 따른다. 이하 순번 12 채무도 같다)
12	J은행	108,473,584	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신용대출)
13	V공제조합	74,754,560	용자금
14	(주)W	52,076,9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3126 가압류 청구채권. 물품대금 원금 50,930,000원 및 이에 대한 납품 완료 익일인 2018. 12. 18.부터의 연 6%의 상사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	원고	94,250,000	
16	피고	340,000,000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2019. 5. 3.까지의 이자(월 2%)는 완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금만 계상
(계)	2,069,899,4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 15, 17, 18,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2020. 7. 27. 및 2020. 9. 28. 각 회신된 것), P은행(2020. 7. 28. 및 2021. 1. 15. 각 회신된 것), J은행(2021. 4. 29. 회신된 것), V공제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P은행 가압류 청구채권 원고는 P은행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가압류의 청구채권 30,423,097원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은행이 소외 회사 소유인 서울 광진구 X동 소재 H건물 4개 호실(앞서 본 적극재산 중 순번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19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30,423,09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 사건기록을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P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19. 5. 3. 당시 P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29,467,863원(위 표의 순번 6)이 전부라는 것이고, 해당 채권은 3,000만 원을 한도로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P은행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2019. 5. 3. 이후 소외 회사와 체결된 별도의 대출계약에 기한 것이거나, 혹은 기존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산한 잔여원리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어느 쪽이든 위 29,467,863원과 별도로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추가로 산입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Y보증보험 및 V공제조합에 대한 보증채무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9. 5. 3. 당시 Y보증보험에 대하여 158,880,720원, V공제조합에 대하여 850,112,098원의 잠재적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의 Z기관, V공제조합, Y보증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각 보증채무에 관하여 2019. 5. 3. 당시 각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외 회사가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따라서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도 있지 않았다), 2019. 5. 3. 당시까지는 조세 체납액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2019. 5. 3.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166,685,571원으로 소극재산의 합계액인 2,069,899,417원을 96,786,154원 상당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형웅

별지